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식품접객업 장소에서 청소년에게 음주 권유 등 금지 및
식품접객업 사업주의 면책 근거 규정〉
■ 이재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6137호)

2025. 2.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식품접객업 장소에서 청소년에게 음주 권유 등 금지 및 식품접객업 사업주의 면책 근거 규정	3
※ 참고자료	13
1. 청소년 주류 판매 행위 인정 유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	1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재정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2. 2.
3. 회 부 일 : 2024. 12.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성인이 동석한 청소년에게 음주를 권유·유인·강요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경우에는, 정작 청소년 음주의 원인을 제공한 동석자는 처벌하지 않는 반면 주류를 제공한 판매자만 처벌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식당 내 청소년 음주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석자에 의한 청소년 음주 권유·유인·강요와 그 방조에 대해 처벌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 주류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 확인과 미성년 주류제공 금지를 충분히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석한

성인의 권유·강요로 청소년이 술을 마셨다면 그 식품접객업자에게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면책조항을 두고자 함(안 제28조제4항, 제5
8조제3호단서 및 제64조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식품접객업 장소에서 청소년에게 음주 권유 등 금지 및 식품접객업 사업주의 면책 근거 규정

개정안은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마시는 것을 권유·유인·강요·방조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청소년과 동반한 성인의 권유·유인·강요·방조로 청소년이 주류를 음용한 경우 식품접객업 사업주의 책임을 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4항, 제58조제3호 단서 및 제64조제2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 ③ (생략) <u><신설></u>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제2조제4호가목1)에 따른 주류를 제공하거나 마시는 것을 권유·유인·강요·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 ⑦ (생략)	⑤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⑧ 제6항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의 작성 방법, 통보 시기, 통보 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⑨ 제7항----- ----- -----.
⑨ 제5항에 따른 표시의 문구, 크기와 제7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의	⑩ 제6항----- ---제8항-----

현행	개정안
종류와 시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생략)	----- -----. ⑪ (현행 제10항과 같음)
제44조(수거·파기)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유자나 유통에 종사하는 자에게 그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제44조(수거·파기) ① ----- ----- ----- ----- ----- ----- -----.
1. 제13조제1항 및 제28조제7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제14조(제28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포장되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는 경우	1. -----제28조제8항----- ----- -----제28조제11항-----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5조(시정명령)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45조(시정명령) ① ----- ----- ----- -----.
1. 제13조제1항 및 제28조제7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28조제8항----- ----- -----
2. 제14조(제28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포장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11항----- ----- ----- -----

현행	개정안
1. 제13조제1항 및 제28조제7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청소년유해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8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포장하지 아니한 자 3. ~ 7의2. (생략) 7의3.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류 등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8.·9. (생략) 제60조(벌칙) 제15조(제28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이나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훼손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략) <신설> ③ (생략)	1. -----제28조제8항----- ----- ----- ----- 2. -----제28조제11항----- ----- ----- ----- 3. ~ 7의2. (현행과 같음) 7의3. 제28조제6항----- ----- ----- 8.·9. (현행과 같음) 제60조(벌칙) -----제28조제11항----- ----- ----- ----- ----- ----- ----- 제6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2. (현행과 같음) 3.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에 따른 주류를 제공하거나 마시는 것을 권유·유인·강요·방조한 자 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28조제1항¹⁾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59조제6호²⁾는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에 대한 주류 등의 판매 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으나,

식품접객업소에서 성인이 동석한 청소년에게 음주를 권유·유인·강요·방조한 경우에는 제재규정이 없어 청소년 음주의 원인을 제공한 동석자는 처벌하지 않는 반면 그 주류를 제공·판매한 식품접객업자만 처벌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1)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5)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2) 「**청소년 보호법**」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략)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7. ~ 9 (생략).

이에 개정안은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마시도록 권유·유인·강요·방조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청소년과 동반한 성인의 권유·유인·강요로 청소년이 주류를 음용한 경우 식품접객업 사업주의 책임을 면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음주 책임을 판매자뿐만 아니라 이를 권유한 성인에게도 부과하고, 식품접객업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로 보임.

현행법 제3조 및 제4조³⁾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이 주류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제지하고 선도하도록 가정 및 사회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생애 음주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41.3%는 가족, 24.6%는 가족 외 성인으로부터 일반음식점에서 음주를 권유·강요받은 경험이

3) 「청소년 보호법」 제3조(가정의 역할과 책임) ①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이하 "친권자등"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청소년 유해환경에 접촉하거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 또는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려고 하면 즉시 제지하여야 한다.

② 친권자등은 제1항에 따른 노력이나 제지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상담기관과 단체 등에 상담하여야 하고, 해당 청소년이 가출하거나 비행 등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지도·단속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의 책임) ①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
2.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 또는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청소년폭력·학대 등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선도할 것
3.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 등이 유통되고 있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청소년이 청소년폭력·학대 등의 피해를 입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등에 신고·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② 매체물과 약물 등의 유통을 업으로 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의 경영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들로 구성된 단체 및 협회 등은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있는 것으로⁴⁾ 나타나고 있는바, 식품접객업 장소에서 음주를 권유·유인·강요·방조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청소년과 동석한 성인에게 청소년 보호 책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음.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먼저, 개정안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주류를 제공하거나 마시는 것을 권유·유인·강요·방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권유·유인·강요·방조 등으로 인한 청소년의 음주 행위는 식품접객업 장소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집이나 휴양시설 등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음에도 단지 식품접객업 장소로만 한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과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를 청소년에게 주류를 마시도록 권유·유인·강요하는 행위 외에 ‘방조’하는 경우까지 규정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또한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주류를 무상으로

4) 출처: 여성가족부,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제시된 질문은 ‘술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에서 함께 간 성인(만 19세 이상의 선배, 생일이 빠른 친구, 아는 사람 등)이 여러분에게 술 마실 것을 권유한다거나 마시라고 강요한다거나 또는 여러분이 술 마시는 것을 말리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이며, 생애 음주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 한함.

제공하는 행위를 할 경우 현행법 제59조제6호⁵⁾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 대상 중 누구든지에는 식품접객업자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조문간 모순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고 봄.

다음, 개정안은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가 주류 판매시 본인 및 나이 확인과 업소에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 금지 표시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청소년이 동반한 성인의 권유·유인·강요로 음주를 한 경우에는 식품접객업자의 책임을 면책하도록 하고 있는데,

식품접객업자가 출입자 본인여부 및 나이를 확인하고,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 금지 표시를 이행하였음에도 식품접객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소년과 동반한 성인의 권유·유인·강요로 인하여 청소년이 주류를 음용한 경우에도 식품접객업자를 처벌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식품접객업자가 술을 제공한 이후에 청소년이 성인들의 술자리에 합석하여 술을 마신 경우 처음 주문 시에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합리적 상황이 없었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⁶⁾에 비추어 볼 때 식품접객업자가 주의 의무를 다

5) 「청소년 보호법」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6) [참고자료 1](청소년 주류 판매 행위 인정 유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4069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282, 판결

한 경우 현행법 체계 내에서도 면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개정안과 같이 면책요건을 명시할 경우 자칫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의 음주를 방조하거나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소지도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한편, 개정안은 제58조제3호에 단서를 신설하여 동석한 성인의 권유·유인·강요로 청소년이 주류를 음용한 경우 해당 사업주의 책임을 면책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식품접객업 장소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 등 금지 위반 시 처벌은 현행법 제59조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을 입법화할 경우에는 제59조제6호에 단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⁷⁾음.

7)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 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 5)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업주뿐만 아니라 식품접객업 장소에서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마시도록 권유·유인·강요 또는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음주에 대한 보호책임이 강화될 것이 예상되므로 입법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다만, 사업주의 유무죄 판단 및 양형은 사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개정안과 같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법 체계상 적절하지 않고 다른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식품접객업 장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권유·유인·강요·방조한 성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청소년과 동석한 성인 등에게 청소년 보호책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 취지에는 동의하나, 과태료는 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질서벌로 명확한 판단기준이 중요하나 동반·동석의 범위나 권유·유인·강요·방조 행위의 판단 기준이 다소 모호한 점,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서 적정성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려울 수 있는 점, 주류가 아닌 담배 등 다른 유해약물이나 유해물건을 제공하거나 유인·강요·방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금에 처한다.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1)·2)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645

[참고자료 1] 청소년 주류 판매 행위 인정 유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4069, 판결

-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여러 사람의 일행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행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음식점 운영자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할 것이므로,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인자들만이 자리에 앉아서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년이 상위에 남아 있던 소주를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282, 판결

-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2008. 1. 27. 01:20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공소외 1(17세, 여) 외 3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참이슬소주 2병, 2,000cc 생맥주 2개, 안주 1개 합계 26,400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 사건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외 1과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여 서로 아는 사이인 공소외 2, 3, 4, 5 등이 먼저 위 음식점에 들어와 위와 같이 참이슬소주 2병, 2,000cc 생맥주 2개 등을 주문하여 놓고 마시다가,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공소외 1을 부른 사실, 이에 위 공소외 1이 위 음식점으로 와서 합석한 다음, 종업원에게 술잔을 더 달라고 하여 위 공소외 2 등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나, 거기에서 나아가 위 공소외 1이 합석한 이후에 술을 더 주문하였거나 피고인 또는 그 종업원이 처음에 술을 주문받을 당시에 나중에 위 공소외 1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고, 한편 위 공소외 2는 1989. 3. 6.생으로서 청소년이 아니며 공소외 3, 4, 5 등이 청소년이라고 단정할 만한 자료 또한 찾아볼 수 없다.
-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공소외 1에게 술 등의 주류를 판매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공소외 2 등이 청소년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그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을 가리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